

재해개요

2020.10.13.(화) 10:10분 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오수관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오수관로 설치를 하기 위해 지장물인 우수암거 하부의 터파기 바닥면 고르기 작업 중 좌측 사면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근로자가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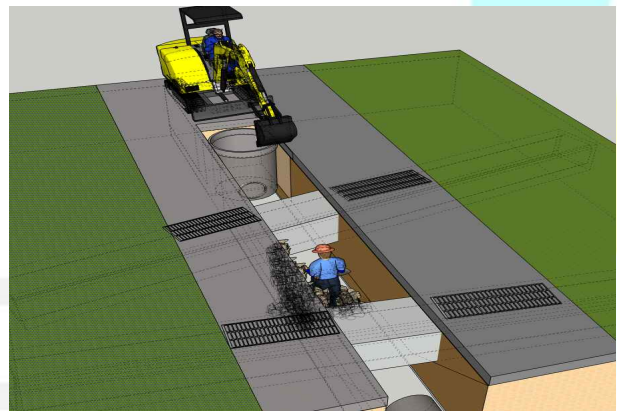
【 유사 재해사례 】

- ◆ 2020.10.19.(월) 경기도 용인시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수관로 흠관(D600mm) 부설작업을 위하여 굴착한 굴착면의 토사(길이 4.2m×높이 2.4m×두께 0.7m, 약 13톤)가 무너지면서 매몰되어 사망
- ◆ 2020. 09. 24.(목) 경기 안양시 소재 정비기반시설공사 현장에서이 오수관로 설치를 위해 굴착 저면에서 작업 중 굴착사면 및 조경석이 붕괴되면서 재해자 2명이 매몰되어 1명은 사망하고 1명이 부상

재해상황도



< 사고발생 장소 >



< 재해발생 상황도 >

재해발생원인

- 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조치 미실시
 -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나 미준수
 - 사업주는 굴착작업에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

재발방지대책

- 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조치 철저
 -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준수 및 흠막이지보공,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 출입금지 등 조치

굴착면의 기울기 기준(제338조제1항 관련 별표 11)

구 분	지반의 종류	기 울 기
보 통 흙	습 지	1 : 1 ~ 1 : 1.5